

예 산 총 칙

2011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16,094,485	9,482,835
일반회계	282,343,789	8,470,314
특별회계	33,750,696	1,012,521
기타특별회계	33,750,696	1,012,521
상수도사업	1,646,137	49,384
하수도사업	1,060,860	31,826
수질개선	6,362,225	190,867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44,050	13,322
의료급여기금	556,958	16,709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303,200	9,096
소득특화사업	4,336,216	130,086
농공단지조성사업	2,228,050	66,842
공영개발사업	5,997,440	179,923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0,815,560	324,467

제 2 조 2011년도 세입,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.세출예산"과 같다

제 3 조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서 : " 해당없음"

제 4 조 2011년도 계속사업 : "해당없음"

제 5 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불임 "명시이월조서"와 같다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592,468천원으로 하며, 예비비의 40%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4,700,000 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
3. 재해대책 및 복구비